



「KB 청년희망적금」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KB청년희망적금

■ 상품특징: 청년고객 대상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상품

2 거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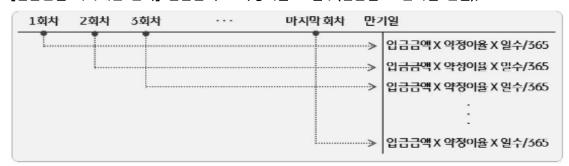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거주자로서 다음 <u>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u>		
	① 나이요건: 가입일 현재 <u>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u> 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6년 이내)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소득요건: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 ^{주1)} 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u>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u>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③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주2)} 과세기간 중 1회이상 <u>금융소득종합과세</u>		
	대상자 ^{주3)}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검증시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L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주3)「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가입제한	■ 전 금융기관 <u>1 인 1계좌</u> (※ 중복가입 불가) ■ 개인사업자 및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공동명의 불가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계약기간	• 24개월			
저축금액	■ 회차별 최소 1 천원이상 1 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50 만원 이하 ※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연간 납입한도 600 만원			
기본이율 (세금공제 전, 2024.2.15 기준)	■ 기본이율: <u>연 5.0%</u>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 적용			
	■ 우대이율: 최대 연 1.0%p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 적용 ※ 우대이율은 아래 항목별 제공조건 충족 및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			
	구분	제공 조건		
	급여이체 우대이율 (연0.5%p)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u>만기 전전월까지</u> 「급여이체실적 ^{주1)} 월 합산금액 50만원 이상」인 월이 <u>6개월</u> 이상인 경우		
우대이율 (세금공제 전, 2024.2.15 기준)	자동이체 우대이율 (연0.3%p)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u>만기 전전월까지</u> 자동이체 등 창구 이외의 채널을 이용하여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적금으 로 납입된 월이 <u>6개월</u> 이상인 경우		
	첫거래우대이율 (연0.5%p)	신규일 기준 예·적금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청약관련상품 ^{주2)} 제외)		
	주1) 급여이체실적 인정 세부 기준 (※ KB국민은행 본인 계좌로부터의 이체 실적은 제외) - 급여이체일이 등록된 계좌의 지정된 급여일(전후 1영업일 포함 3영업일)에 건별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이체일이 등록된 계좌에 적요(월급/급여/수당/급료/상여/보너스/봉급/연금/성과급/보로금/임금/Salary/bonus/pay)가 기재된 건별 50만원 이상의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이체 계약(신청)에 의해 KB국민은행 급여이체 전산(급여성 선일자, 급여성 탑라인, 기업인터넷뱅킹 등)을통한 건별 2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주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최종이율 (세금공제 전, 2024.2.15 기준)	■ 최저 연 5.0% ~ 최고 연 6.0% ※ 최고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최대 우대이율 적용 시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_ 0 1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일수(입금일 ~ 만기일 전일)/365

만기이자 계산방법 (산출근거)



■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이율 적용 (단위: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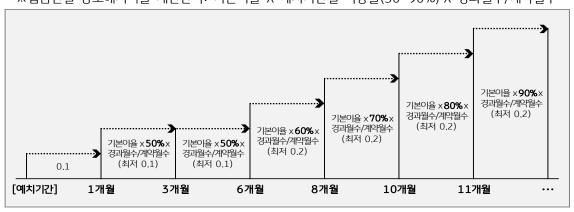
예치기간 이율 1개월미만 0.1 1개월이상 ~ 3개월미만 기본이율 X 5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1) 3개월이상 ~ 6개월미만 기본이율 X 5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1) 6개월이상 ~ 8개월미만 기본이율 X 6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2) 8개월이상 ~ 10개월미만 기본이율 X 7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2) 10개월이상 ~ 11개월미만 기본이율 X 8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2) 기본이율 X 9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2) 11개월이상

중도해지이율 (세금공제 전, 2024,2,15 기준)

- 1. 경과월수 : 입금일 다음날로부터 해지월 입금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절상
- 2. 계약월수 : 신규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월 신규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 1개월미만은 절상 ※ 단, 계약기간이 월단위인 경우 계약월수를 그대로 사용하며,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 3.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 부적격 통지시 중도해지 이율: 기본이율 적용 (※ 우대이율 제외) "신규일로부터 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지를 받은 날의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기본이율 적용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원미만 절사)

※입금건별 중도해지이율 계산산식: 기본이율 X 예치기간별 적용률(50~90%) X 경과월수/계약월수

중도해지 이자계산 방법 (산출근거)



■ 해당사유 발생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신청 ■ 해당사유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자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특별중도해지 마.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적용이율 : 기본이율 적용(※ 우대이율 제외) ■ 세제혜택 :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제한사항 : 특별중도해지 후 청년희망적금 재가입 불가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단위: 연 %) 이율 경과기간 만기후이율 만기후 1개월이내 기본이율 X 50% (세금공제 전, 2024.2.15 기준) 만기후 1개월초과 ~ 3개월이내 기본이율 X 30% 만기후 3개월초과 0.1 ※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 저축장려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 기간 저축장려금

저축장려금

- 가입일 ~ 12 개월 적금 납입원금의 2%(최대 12 만원)
- 적금 납입원금의 4%(최대 24만원) 13 개월~ 24 개월
 - (예시) 22.02.21 신규가입 후 매월 50 만원씩 2 년간 납입한 계좌의 저축장려금 계산
 - ① 1 차년도(22.02.21~ 23.02.20): 납입원금 600 만원 X 2% = 12 만원
 - ② 2 차년도(23,02,21~ 24,02,20): 납입원금 600 만원 X 4% = 24 만원
 - ☞ 총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만기 해지 시 수령
- 유의사항
 - 1 저축장려금은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❷ 특별중도해지시 해지일까지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

상품 특약에 동의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의 지급조건·지급액·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저축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세제혜택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 21 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 21 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 2022.12.31 까지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시 비과세 적용 			
거래방법	■ 신규 및 해지 : KB 스타뱅킹, 영업점		-	
만기예금	■ 가능			
편리입금서비스	※ 만기예금 편리입금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만기자동 해지 및 지정계좌로 입금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계좌에 압류和, 가압류和, 질권적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 1) 압류: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주 2)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주 3) 질권설정: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자동이체	■ KB 국민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나,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예치	■ 불가	일부인출	불가	
질권설정	■ 가능	양도	불가	
명의변경	■ 불가			
만기앞당김지급	■ 불가			
담보제공	■ 가능 : 예금담보대출은 계좌잔액의 95%까?	지 가능		
휴면예금 및 출연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97)"에 출연^{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주)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사용하지 않는 소액계좌를 잔고 이전/해지 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 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에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5천만원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주1)} 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 ^{주2)} 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 부담 없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1)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제1,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주2) 해지요구서: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 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상품 가입 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적금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소득확인 및 상품가입을 위한 정보 동의가 필수적인 상품으로 <u>대리인 거래는 불가</u>합니다. 중도해지 계좌 또는 만기일이 휴일인 계좌를 만기일 전 영업일에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 및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유의 사항

- 이 적금은 'KB국민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수신상품부(P)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99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kbstar.com),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